

의안번호	제 389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7월 일 (제 282 회)

**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
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09년 7월 2일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7. 2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0949호, 2008. 8. 4, 전부개정)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함 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입법예고 : 생략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학교보건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0949호, 2008. 8. 4,
전부개정]

제7조(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)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
·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